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 . . . (제 회)	

학 교 안 전 사 고 예 방 및 보 상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본 영에서 규율하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(제14조) 및 기금 관리·운용(제24조)에 있어, 관련 법률인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타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보호를 증대하고자 함. 또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제33조의2)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“일반병상”의 범위를 확대(안 제14조)

- 1)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「학교안전법」 간 ‘일반병상’ 및 ‘상급병상’의 정의가 상이하여 국민에게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, 「학교안전법」에서의 병상 기준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의 불합리한 제한 해소

* 현행 「학교안전법」에서는 3인 이상 병상을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1인 병상만을 ‘상급병상’으로 규정 →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일반병실인 2~3인실 이용 시 「학교안전법」상 상급병상으로 구분되어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일부 미지급

- 2) 본 영은 국민 제안에 따라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('25.9.)되어, 조속한

개정을 통해 법령 간 일관성 확보 및 국민 권익보호 필요

나. 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준용하는 법률명 변경(안 제24조)

「증권거래법」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규정을 현행화

다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범위 추가(안 제33조의2)

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자체 사업*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공제보상의 지연 및 행정상 불편함이 발생하므로, 시·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자체 사업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 대상에 추가

* (공제회) 교원보호공제, 여행자공제

(공제중앙회)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, 학교배상책임공제,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등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입원료는 일반병상(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)의 입원료를 지급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상급병실(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)”을 “상급병상(일반병상 외의 병상으로서 입원실 이용에 대하여 병실 이용 차액이 발생하는 병상)”으로, “병실의”를 “병상의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「증권거래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”을 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의2. 법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제회 사업 중 시·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

3. 법 제29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사

업 중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(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)	제14조(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)	제14조(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)		
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(이하 “요양급여”라 한다)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<u>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.</u> 다만, 전신 화상자,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,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<u>상급병실(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)</u> 에 입원했을 때(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<u>병실의</u> 입원료를 지급한다.	1. <u>입원료는 일반병상(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)의 입원료를 지급한다.</u> ----- <u>상급병상(일반병상 외의 병상으로 서 입원실 이용에 대하여 병실 이용 차액이 발생하는 병상</u> ----- ----- --- <u>병상의</u> ----- --.	1. <u>입원료는 일반병상(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)의 입원료를 지급한다.</u> ----- <u>상급병상(일반병상 외의 병상으로 서 입원실 이용에 대하여 병실 이용 차액이 발생하는 병상</u> ----- ----- --- <u>병상의</u> ----- --.		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	2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2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란 「 <u>증권거래법</u> 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	제2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----- ----- ----- 「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 」	제2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----- ----- ----- 「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 」		

<u>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</u> <u>업을 말한다.</u> 제3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교육부장관, 교육 감, 학교장, 공제회 및 공제중앙 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 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<u>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</u> <u>제사업</u> 4. ~ 13. (생 략)	<u>제4조에 따른 증권</u>----- -----. 제3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법 제18조제1항제7호 및 <u>제8호에 따른 공제회 사업 중</u> <u>시·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</u> <u>수행하는 사업</u> 3. 법 제29조제1항제5호부터 제 <u>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</u> <u>중앙회 사업 중 교육부장관의</u> <u>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</u> 4. ~ 13.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62